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11개) 최종 금리 공시, 6.15.(목)부터 6.23.(금)까지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

1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 (별첨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등, (별첨2) 주요 QA

6.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23.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

가입 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 23(금)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2 청년도약계좌 금리 관련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

11개 취급은행은 오늘(6.14일)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하였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청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¹⁾

(3년 고정기간 중 은행 제공금리²⁾)

기본금리 연 4.5%

+ 소득⁺우대금리 연 0.5%³⁾

+ 은행별 우대금리 연 0%~1.0%⁴⁾

일반적금(과세상품)¹⁾

(금리 연 7.68~8.86%)

※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⁵⁾
세전 3.59%(세후 3.04%)

 **납입액 : 4,200만원(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

+

**납입액에 대한 은행 이자(세전) :
534~640만원**

+

**은행 이자(세전) :
820~946만원**

+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세전) :
160만원**

-

이자소득세 : 0원(비과세)

-

이자소득세⁶⁾ : 126~146만원



만기시 수령액 : 4,894~5,000만원

- 1) 매월초 7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경우 가정, 단리 적용
- 2) 은행 제공금리는 가입시기별·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 2년 변동금리 적용기간 중 기준금리는 현재와 동일 수준(3.5%) 가정
- 3)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우대금리(가입시기별·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 4) 우대금리는 가입시기별·은행별로 상이한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제공받을 수 있음
- 5) '23.4월 신규취급액 기준(한국은행)
- 6) 이자소득세율은 15.4%인 경우 가정

청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¹⁾

(3년 고정기간 중 은행 제공금리²⁾
기본금리 연 4.5%³⁾
+ 은행별 우대금리 연 0%~1.0%)

일반적금(과세상품)¹⁾

(금리 연 7.01~8.19%)

※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⁴⁾:
세전 3.59%(세후 3.04%)

 **납입액 : 4,200만원(매월 70만원씩 5년 간 납입)**

+

납입액에 대한 은행 이자(세전) :
480~587만원

+

은행 이자(세전) :
748~874만원

+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세전) :
153만원

-

이자소득세 : 0원(비과세)

-

이자소득세⁵⁾ : 115~134만원



만기시 수령액 : 4,833~4,940만원

- 1) 매월초 7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경우 가정, 단리 적용
- 2) 은행 제공금리는 가입시기별·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 2년 변동금리 적용기간 중 기준금리는 현재와 동일 수준(3.5%) 가정
- 3) 우대금리는 가입시기별·은행별로 상이한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제공받을 수 있음
- 4) '23.4월 신규취급액 기준(한국은행)
- 5) 이자소득세율은 15.4%인 경우 가정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치연 (02-2100-1685)
		담당자	사무관	윤세열 (02-2100-1686) 김이재 (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	책임자	본부장	김진휘 (02-2128-8080)
		담당자	부장	이윤경 (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	책임자	본부장	이인균 (02-3705-5184)
		담당자	부장	이종혁 (02-3705-5326)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요건 등

□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 (연계지원)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2.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 (기본구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제공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관련 >**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요건 확인 관련 >**4.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23.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3.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희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 확인 관련 >

6.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년년도('21.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8.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9.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심사 관련 >

10.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11.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12.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구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80%
1인가구	1,827,831	3,290,095	1,944,812	3,500,661
2인가구	3,088,079	5,558,542	3,260,085	5,868,153
3인가구	3,983,950	7,171,110	4,194,701	7,550,461
4인가구	4,876,290	8,777,322	5,121,080	9,217,944
5인가구	5,757,373	10,363,271	6,024,515	10,844,127
6인가구	6,628,603	11,931,485	6,907,004	12,432,607
7인가구	7,497,198	13,494,956	7,780,592	14,005,06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21년은 868,595원, '22년은 873,588원씩 증가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관련 >

13.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4.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15.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하되는지?

-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6.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소득요건 충족횟수	5회	4회	3회	2회	1회
소득+우대금리 수준	공시금리 100% 지급	공시금리 80% 지급	공시금리 60% 지급	공시금리 40% 지급	공시금리 20% 지급

* 은행별 금리수준 및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 참조

17.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

18.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 더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